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1725호

시행일자 2021. 12. 27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과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과
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
고시 제2021-319호)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319호 (2021. 12. 24.)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
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
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9호, 2021.12.13
.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
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개정 고시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